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1990. 3. 1.

제43차 개정 2024. 11. 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급 규정은 학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면학풍토조성에 기여하고, 면학의욕을 더욱 고취시켜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개정 2000.8.30.)

1. 부총장, 교무연구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개정 2007.5.14., 2019.5.14., 2022.4.20.)
2. 위원장은 부총장이 하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한다. (개정 2012.5.4., 2019.5.14., 2022.4.2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정책의 중요시책에 관한 심의
2. 장학종별 인원 및 지급액 배정을 위한 심의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3장 장학금의 종류

제4조(구분)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종류) ①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장학생 선발준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5., 1999.12.30., 2004.7.26., 2024.7.30.)

1.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화목장학금 (신설 2003.3.1.)
4. 봉사 장학금
5. 교직원자녀 장학금

6. 유공자자녀 장학금
7. 체육특기자 장학금
8. 체육유공장학금 (신설 1999.12.15.)
9. 상지희망나눔장학금 (신설 2012.5.4.)
10. 근로장학금
11. 보훈장학금
12. 특별장학금
13. 삭제 (2012.5.4.)
14. 외국인·재외국민 장학금
15. 삭제 (2008.6.16.)
16. 해외연수장학금 (신설 1999.12.30.)
17. 상지장학금 (신설 2001.1.19.)
18. 공무원장학금 (신설 2003.8.29.)
19. 장애인장학금 (신설 2004.7.26.)
20. 취·창업장려장학금 (신설 2006.2.27.)
21. 고시장학금 (신설 2008.6.16.)
22. 학업봉사장학금 (신설 2008.6.16.)
23. 군위탁장학금 (신설 2008.6.16.)
24. 부서관장학금 (신설 2008.6.16.)
25. ROTC장학금 (신설 2009.7.27.)
26. 활동장려장학금 (신설 2009.7.27.)
27. (신설 2009.7.27.) (삭제 2019.5.14.)
28. (신설 2009.7.27.) (삭제 2019.5.14.)
29. (신설 2009.7.27.) (삭제 2019.5.14.)
30. 상공회의소회원가입업체직원장학금 (신설 2012.5.4.)
31. 교직원 본인 장학금 (신설 2012.5.4.)
32. 상지포인트장학금 (신설 2012.5.4.)
33. 편입교류협약장학금 (신설 2012.5.4.)
34. 교육역량장학금 (신설 2012.5.4.)
35. 학사편입장학금 (신설 2013.11.27.)
36. (신설 2015.3.2.) (삭제 2019.5.14.)
37. (신설 2015.9.7.) (삭제 2019.5.14.)
38. (신설 2016.1.12.) (삭제 2019.5.14.)
39. (신설 2016.9.19.) (삭제 2020.2.11.)
40. 동문자녀장학금 (신설 2017.5.16.)

41. 상지119장학금 (신설 2018.4.16.)
42. 새터민장학금 (신설 2018.8.29.)
43. 다문화가정장학금 (신설 2018.8.29.)
44. 평생교육장학금 (신설 2020.2.11.)
45. 특례편입학장학금 (신설 2020.6.18.)
46. 편입학장학금 (신설 2020.11.26.)
47. 학습지원장학금 (신설 2021.3.25.)
48. 상지스타트 장학금 (신설 2021.11.26.)
49. TOPIK우수장학금 (신설 2024.11.04.)

② 외부장학금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사기업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장학생 선정 및 지급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은 별도로 공고하며,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6., 2012.5.4., 2019.5.14., 2022.4.20.)

1. 삭제 (2012.5.4.)
2. (개정 2004.7.26.) (삭제 2012.5.4.)
3. (신설 2004.7.26.) (삭제 2012.5.4.)

제7조(지급대상)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학내활동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있는 사람
3. 본 대학교 및 전문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
4. 가정사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사람
5.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6.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7.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단, 지급중지 해제는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1999.12.15., 2014.7.16.)

1. 휴학 (단, 휴학자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 후 장학금이 이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5.4.)
2. 제적
3. 대·내외에서 징계 처벌을 받은 학생
4.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

- 5.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한때
- 6. 장학종별로 정하는 학업성적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개정 2002.7.31., 2005.4.19., 2018.4.16.)
- 7. 삭제 (1999.12.15.)

제9조(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해당금액의 학비감면 또는 현금으로 한다.

제10조(지급시기) 교내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특별한 규정과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초로 한다.

제11조(이중지급금지) 교내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며 1인이 2종류 이상의 장학금 수혜 자격이 되었을 때는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제12조(이중지급금지에외) 교내 장학금 중 1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라도 근로장학생, 해외 연수장학생, 취·창업장려장학생, 학업봉사장학생, ROTC장학생, 특별장학생, 교육역량장학생, 봉사장학생Ⅰ, Ⅱ, 활동장려장학생, 포인트장학생, 상지119장학생, **TOPIK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단, 봉사장학생Ⅰ, 활동장려장학생, ROTC장학생, **TOPIK우수장학생**은 등록금 한도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00.1.28., 2006.8.8., 2006.12.11., 2007.3.12., 2007.10.29., 2009.7.27., 2012.5.4., 2015.3.2., 2015.9.7., 2016.1.12., 2016.9.19., 2018.4.16., 2019.5.14., 2020.2.11., 2024.7.30., [2024.11.04.](#))

제13조(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4.)

- 제14조(외부장학생의 배정 및 추천)**
- ① 외부장학단체로부터 해당대학 및 인원을 지정하여 왔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이 추천한다.
 - ② 특정대학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학별 장학생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대학을 선정한다. (개정 2019.5.14., 2022.4.20.)
 - ③ 외부장학단체로부터 해당학과, 학부(군) 또는 전공을 지정하여 추천의뢰를 하여왔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④ 외부장학단체로부터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의뢰를 하여 왔을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⑤ 추천한 학과, 학부(군) 또는 전공의 학생에게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3년간 그 학과, 학부(군) 또는 전공에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지급기준) 이 규정 제5조에 의거한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규정은 199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대여 장학금) 대여 장학금 상환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2조에 한하여 1999학년도 2학기에 해외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근로장학 및 해외연수장학 적용례) 제8조 제6호는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로장학금 및 해외 연수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55, 2004.07.23.)

이 규정은 200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97, 2005.04.19.)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 지급중지에 대한 적용시점) 제8조 제6호의 제외사항은 2005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13, 2006.02.27.)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25, 2006.08.08.)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85, 2006.12.11.)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25, 2007.03.12.)

이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29, 2007.05.14.)

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33, 2007.10.30.)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28, 2008.06.18.)

이 규정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67, 2009.07.27.)

- ① 이 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5조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에 대한 적용시점) 이 규정 제5조 25호 ROTC장학금, 26호 활동장려장학금, 27호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28호 특성화장학금, 29호 학비보조장학금은 2009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③ (제12조 이중지급금지에외에 대한 적용시점) 이 규정 제12조 이중지급금지에외는 2009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57, 2012.05.0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조 1항중 규정 개정을 통하여 명시된 장학금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하며, 2012년 1학기 이전의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는 현 규정에 적용하여 지급한 장학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예산부-859, 2013.11.2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35호 학사편입장학금은 2014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00, 2014.07.16.)

이 규정은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5, 2015.03.02.)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00, 2015.09.07.)

- ①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2, 2016.01.1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00, 2016.09.19.)

이 규정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13, 2017.05.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5조 제1항 제40호의 동문자녀장학금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11, 2018.04.16.)

이 규정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52, 2018.08.2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45, 2019.05.14.)

이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96, 2020.02.1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제5조(종류) 제1항 제44호 평생교육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13, 2020.06.18.)

이 규정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739, 2020.11.2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5조 제1항 17호 상지장학금, 33호 편입교류협약장학금, 35호 학사편입장학금은 2020학년도 편입학생까지 적용하고, 46호 편입학장학금은 2021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

다.

부칙 (기획예산팀-184, 2021.03.25.)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22, 2021.11.26.)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645, 2024.07.30.)

이 규정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355, 2024.11.04.)

이 규정은 2024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